

힐스테이트 고덕 센트럴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 031-611-2667)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거주요건	재당첨제한
민영	비규제지역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평택시 거주자	10년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최초당첨자발표일(2021.01.08.)로부터 3년간 적용되어 현재 전매제한기간 도과	없음	적용	공공택지, 대규모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일정	2026.03.31.(화)	2026.04.06.(월)	2026.04.07.(화)	2026.04.10.(금)	2026.04.17.(금)

1

공통 유의사항

■ 청약 신청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준공 및 입주자 완료된 단지로 견본주택 운영이 종료되었으며, 반드시 현장 주변 및 단지 여건, 주변시세 등을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계약자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위반으로 인한 취소세대이며, 준공 이후 현재 상태로 분양하며 계약체결 전 계약대상 동호를 방문하여 주택의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계약체결 대상자에 한하여 동호 개방 예정)
- 준공 이후에 분양하는 아파트로 최초 계약 당시 기선택 품목과 현 상태를 모두 수락하는 조건으로만 공급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현 상태 그대로 분양함에 따라 발코니 확장 및 옵션, 추가 시설물 설치 및 교체, 수선 등을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기재된 내용 외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20.12.18.)을 준용하오니 해당 공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이하 “**불법행위재공급 주택**”이라 함)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특별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각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일반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무주택세대주(무주택세대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불법행위재공급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잔여세대 (불법행위재공급)	○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부적격 당첨자)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됩니다.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동일 주택형 내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단, 금회 일반공급 배정세대수가 없는 주택형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지 않음).
- 주택형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세대수의 **9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분양사무실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금회 공급하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주택형이 상이하므로 특공 예비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을 일반 예비자에게 공급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다만, 제19조제5항 및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과의 계약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적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사항

- 본 아파트는 건본주택 운영이 종료되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되었던 발코니 확장 공사 및 발코니 확장시 제공 품목,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이 시공이 완료됨에 따라 모두 수락하는 조건으로만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하오니 이점 청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급계약 체결 후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 품목의 추가, 변경 또는 취소는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계약 체결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금, 잔금 순으로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3.31.(화)**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5930058**입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12.18.(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0001388**이므로,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제외)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청약접수	일반공급 청약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일 정	2026.04.06.(월)	2026.04.07.(화)	2026.04.10.(금)	2026.04.17.(금)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분양사무실 (주소: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대로 77, 브리티시고덕 1층 1208호)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동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배우자도**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경기도 평택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발표일(2021.01.08.)로부터 3년간 적용되어 현재 전매제한 기간이 도과하였습니다.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입주 단지로 중도금은 없으며 입주기간 내 잔금을 납부 하여야 하며, 청약전 본인의 대출가능여부, 대출한도, 자금계획 등을 면밀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개인별 대출한도·대출불가, 자금사정 등의 사유로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으며 사업주체 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급 금액 납부 일정

- 발코니 확장 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하며, 해당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에 따른 유의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20.12.18.)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약식표기	동호	공급대금	계약금	잔금
				10%	90%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1	84A	201-3803	7,130,000	713,000	6,417,000
2	84A	201-4503	7,130,000	713,000	6,417,000
3	84B	203-2602	8,350,000	835,000	7,515,000

■ 플러스 옵션(가전 옵션 제외) 및 가전옵션(시스템에어컨 및 기타가전) 공급 금액 납부 일정

- 플러스 옵션(가전 옵션 제외)의 비용은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 비용과 별도로 부담해야하며, 해당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공정상 가전옵션 선택품목의 설치가 완료되어 상기 가전옵션에 대한 계약이 필수이며, 기 설치된 가전옵션 외에 품목의 추가 및 기존계약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 상기 가전옵션 선택품목은 설치가 완료된 품목이므로 계약체결 이후 계약해제는 불가합니다.
- 상기 가전옵션 선택품목은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세 내용은 가전옵션 선택품목 계약서에 기재하오니 계약체결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외에 가전옵션 선택품목 관련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2020.12.18.)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플러스 옵션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약식표기	동호	구분	공급대금	계약금	잔금
					10%	90%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1	84A	201-3803	신발장, 복도팬트리(+시스템선반)	2,180,000	218,000	1,962,000
			아일랜드, 주방팬트리(+시스템선반), 발코니2 시스템선반	3,020,000	302,000	2,718,000
			침실1 화장대	2,040,000	204,000	1,836,000
			주방 추가 수납팬트리	590,000	59,000	531,000
			침실1 드레스룸 슬라이딩도어/드레스룸 시스템가구	6,210,000	621,000	5,589,000
			빨래건조대	143,000	14,300	128,700
	소계			14,183,000	1,418,300	12,764,700
2	84A	201-4503	신발장, 복도팬트리(+시스템선반)	2,180,000	218,000	1,962,000
			아일랜드, 주방팬트리(+시스템선반), 발코니2 시스템선반	3,020,000	302,000	2,718,000
			침실1 화장대	2,040,000	204,000	1,836,000
	소계			7,240,000	724,000	6,516,000

(2) 가전 옵션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약식표기	동호	구분	공급대금	계약금	잔금
					10%	90%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1	84A	201-4503	천정형 시스템에어컨(5개소) 거실1, 주방1, 침실1,2,3	7,700,000	770,000	6,930,000
	소계			7,700,000	770,000	6,930,000

■ 공급대금, 발코니확장, 플러스옵션(가전 옵션 제외), 가전옵션대금(시스템에어컨 및 기타가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아파트 분양대금	경남은행	207-0114-2398-00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발코니 확장	경남은행	207-0114-2406-09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플러스 옵션(가전 옵션 제외)	경남은행	207-0114-2416-05	주시회사 코람코자산신탁
가전옵션대금(시스템에어컨 및 기타가전)	하나은행	397-910008-93404	주식회사 케이엔커

※ 모든 공급금액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입금해야하며, 현금 수납은 불가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세대별 인지대,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계약금, 잔금에 대하여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공사 및 플러스옵션(가전포함) 납부계좌는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충분히 확인하고 납부해야 하며, 상기 항목별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 입금하시고 입금증은 계약 시 제출 바랍니다.

(입금 예시 : 201동 3803호 당첨자가 홍길동인 경우 입금자명 '2013803홍길동')

※ 타인 명의 등 납부 주체가 당점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공급대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 등의 처리가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모든 공급금액 중 계약금, 잔금은 약정된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회차별 지정 계약 기간 내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금자 중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시기 방법 등은 추후 통보)

※ 잔금 납부기일 이전 선납을 하는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전자수입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또는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사본 첨부)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 이므로 분양계약(전매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와 발코니 확장 계약 등 추가선택품목 계약에 따른 인지세를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며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 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자금관리 대리사무 주요사항 안내

- 지정된 분양수입금관리계좌 외로 입금된 분양대금은 분양대금의 납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은 매도인과 체결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며 그 외에 매도인으로서의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반환 등 매도인으로서의 의무 일체는 매도인인 팽택고덕피에프비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수분양자는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에 직접 매매대금 반환 등 매도인으로서의 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입금된 분양대금은 토지비, 사업비, 대출원리금, 매도인 운영비 등 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특별공급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4-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불법행위재공급 → 주택명 및 주택형 등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4.10.(금) ~ 2026.04.19.(일)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04.10.(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서류 및 계약체결 안내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자	■ 2026.04.17.(금)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포함 (예비입주자의 계약 체결일정 추후 통보)
서류제출처	■ 분양사무실(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대로 77, 브리티시고덕 1층 1208호)
유의사항	■ 추후 서류제출 방법 및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며, 변경시 개별 통지 예정입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증명서류는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공통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일(2026.04.17.)**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3.31.)**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 등이 모두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등록표초본 대리인 발급 시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미포함하여 발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리인이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경우 해당 주민센터에 반드시 과거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요청하시기 바라며, 미표기 시 정확한 자격 확인을 위하여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서류제출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배우자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등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기존주택 처분관련 서약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특별공급 신청서, 서약서	본인	• 사업주체 분양사무실 비치-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특별공급 확약서, 인터넷 청약 동의서	본인	• 사업주체 분양사무실 비치-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손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이혼·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청약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 자녀가 미혼으로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분양사무실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청약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무주택 소명자료	해당주택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축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
대리인 신청시 추가제출 서류(본인외 모두 제3자)		○	계약자(당첨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아파트계약위임용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	위임장	-	• 계약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대리계약 불가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사업주체 분양사무실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 체결
특별공급, 일반공급	※ 일시 : 2026.04.10.(금)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6.04.17.(금), 1일간, 10:00 ~ 14:00 * 예비입주자 별도 안내 ※ 장소 :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대로77, 브리티시고덕 1층 1208호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제한사항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당첨자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예비입주자 선정 및 계약관련 안내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 서류접수는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수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이 진행되며, 자세한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단, 계약 현황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하단 당첨자 계약체결 구비서류 참조
-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분양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계약 시 현금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이체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서류유형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시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추가 개별통지 서류		○	-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용도 : 아파트계약용 ※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 본인계약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인감도장	○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계약금(무통장 입금증) 입금증	○		-	· 분양사무실에서는 현금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		-	· 분양사무실에 비치
대리인 계약시 추가제출 서류 (본인외 모두 제3자)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	· 분양사무실에 비치 ※ 거래가격 6억원 이상 계약시 신고의무
	계약자(당첨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본인	· 용도 : 아파트계약 위임용 ※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 계약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대리계약불가
	위임장		○	-	· 분양사무실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table><tr><td>조항</td><td>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td><td>주거전용면적</td><td>수도권</td><td>비수도권</td></tr><tr><td>제53조제9호가목</td><td>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td><td>60㎡ 이하</td><td>1억 6천만원</td><td>1억원</td></tr><tr><td rowspan="3">제53조제9호나목</td><td>단독주택</td><td rowspan="3">85㎡ 이하</td><td rowspan="3">5억원</td><td rowspan="3">3억원</td></tr><tr><td>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td></tr><tr><td>도시형 생활주택</td></tr></table>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

10

단지 여건 등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20.12.18.)을 확인하시어 모든 유의사항 및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주택은 공사 완료된 단지로서, 기 설치된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에 대해 추가 · 변경 · 취소 등을 요구하실 수 없으니, 이점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준공 및 입주 완료되었으므로 설계변경 또는 마감사양 등 시공상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잔금 지급 전 하자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주차장 출입 가능한 제한 높이 : 차량 진출입구 유효높이는 2.3m이상, 차량 통행구간의 유효 천장고는 2.7m이상(지하2층), 2.3m(지하2층 일부, 지하3층), 주차구획은 2.1m 이상(공동주택 주차장_지하 2~3층)**
-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센터), 작은도서관 등**
- **교육시설 관련**
- ※ 본 아파트는 율포초 통학구역에 해당되며 입주 초등학생은 율포초에 배치 예정임
- ※ 본 아파트 입주 중학생은 고덕중학군(민세중, 해창중, 고덕9중(2027. 3. 개교 예정), 고덕1중·고덕6중(2029. 3. 개교 예정))에 배치될 예정임. 중학교 신입생은 컴퓨터 전산 추첨 방식으로 배정되며, 중학군(구)지정은 매해 전년도에 확정·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배정일정 및 방법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본 아파트 입주 예정인 고등학생은 평택 내 기존 고등학교(22교)와 설립이 확정되어 추진 중인 3교((가칭)화양2고 2027. 3. 개교 예정, (가칭)고덕6고 및 송담고 2028. 3. 개교 예정)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설립 계획된 학교(공립단설유치원 포함)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 투자심사에서 승인되어야 설립 추진이 가능하고 공동주택 인근의 모든 학교(공립단설유치원 포함) 용지가 설립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학교설립계획 보류(취소), 개발(실시)계획 변경, 학생 수용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추후 변경 또는 해제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 확인 바랍니다.
- ※ 현재까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설립이 확정된 학교는 아래와 같으며, 개교예정시기는 기상상황, 공사추진일정, 기타 등의 사유로 변경될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학교명	개교(예정)시기
유	울포숲유(고덕1유)	2025. 3.
	평택고덕유(고덕2유)	2021. 3.
	함박유(고덕8유)	2023. 3.
	(가칭)고덕10유	2029. 3.(예정)
초	울포초(고덕1초)	2023. 9.
	종덕초(고덕2초)	2020. 3.
	민세초(고덕4초)	2024. 9.
	고덕초(고덕10초)	2022. 3.
	해창초(고덕11초)	2024. 9.
	고덕함박초(고덕13초)	2025. 3.
	(가칭)고덕초	2028. 3.(예정)
	(가칭)고덕초	2028. 9.(예정)
	(가칭)고덕14초	2029. 3.(예정)
중	민세중(고덕3중)	2023. 3.
	해창중(고덕8중)	2024. 9.
	(가칭)고덕9중	2027. 3.(예정)
	(가칭)고덕1중	2029. 3.(예정)
	(가칭)고덕6중	2029. 3.(예정)
고	송탄고(고덕3고)	2025. 3.
	(가칭)고덕6고	2028. 3.(예정)

※ 단지 인근 학교설립으로 인하여 인접동의 경우 학교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통신감리
회사명	(주)건축사사무소건원엔지니어링	(주)케이아이씨	(주)하일기술단
감리금액	일금이십팔억구천칠백이십구만삼천원정 (₩2,897,293,000)	일금일십일억육천이백팔십이만구천오백육십사원정 (₩1,162,829,564)	일금육억팔천만원정 (₩680,000,000)

■ 친환경 건축물 성능수준 표기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제3항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지역난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고효율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자
상호명	주식회사 평택고덕피에프브이	현대엔지니어링(주)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23-7, 201호(영덕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등록번호	661-81-01929	101-81-66755
대표번호	02-3447-4800	02-2134-1114

[illegible]

■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분양사무실 위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대로 77, 브리티시고덕 1층 1208호
 ■ 분양 문의 : 031-611-2667 (평일 10:00~16:00, 주말·공휴일·점심시간(11:30~13:00)제외 / 통화량이 많을 경우 전화연결이 지연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분양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고와 분양계약서상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분양계약서를 우선 적용합니다.